

報 道 資 料

2.28(토) 조건부터 보도하되, 본회의 결과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.

제목: 「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」 국회 본회의 통과

□ '04.2.27(금) 14:00 국회 본회의에서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」(이하 “지역특구법”)이 통과되어 금년 9월부터 시행예정

-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
- 지역특구법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3월중 공포될 예정이며 법 제정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중 시행

□ 주요내용

- 국회는 법명을 「지역특화발전특구법」에서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으로 수정하여 규제특례를 위한 범임을 명확히 함

* 규제특례에는 규제완화 뿐 아니라 규제강화(예:마라도 청정특구)도 포함

- 자치단체가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특구위원회(위원장:재정경제부장관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하되 별도의 재정·세제 등 지원조치는 없음

-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중 관계부처와 합의하에 34개 법률에 있는 71개의 규제특례*를 수용하여 법제화하였으며

* 토지관련 12개 법률·26개 규제특례 및 개별법상 25개 법률·45개 규제특례(산림법·국토계획법·농지법은 토지규제 및 개별규제 특례를 모두 적용)

- 안전·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규제특례요구는 검토단계에서 제외

○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일괄처리

- 자치단체가 토지이용에 대한 「특구토지이용계획」을 수립하여 특구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 토지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일괄처리 가능
 - * 지역특구법상 토지규제특례는 인·허가 폐지가 아니라 특구계획 승인시 인·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둔 것임
 - * 현재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이 허가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해당토지 사용이 곤란
→ 특구계획 승인시 농지전용 허가·도시지역변경 허가를 일괄의제
- 토지규제특례가 난개발,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장치 마련
 - * 특구지정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실시, 투기과열지구 지정·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근거 마련, 재경부장관·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 특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가격안정 조치의무 부과

○ 개별법상 규제특례

- 의료법·초중등교육법 등 25개 법률상의 45개 규제를 매제토록 하는 특례를 마련
 - * 다만, 교육·의료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동향을 지켜본 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지역특구법 제정시에는 미반영

□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기대효과

- 특구제도는 시·군·구 기초자치단체가 중앙 의존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하에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
 - 중앙정부는 규제특례를 통하여 규제완화 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시·군·구 자치단체가 관련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One-Stop Service 제공
- ⇒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을 “개성있는 국토”로 조성

□ 후속조치

- 하반기중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·시행규칙을 제정
-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제도 이해와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
 - * 제1차 지방순회 설명회는 '03.7.7~16 기개최(재경부, 행자부, 국가균형위 합동)
 - 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을 돕기 위하여 필요시 하반기중 제3차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
-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구 지정신청 및 특구지정
 - 특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구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특구계획을 심사하여 금년말까지 특구를 지정할 예정
 - * 실제 특구지정은 법제정 후 특구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되므로 현 시점에서 몇 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곤란

<참고 1>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절차

<참고 2> 주요 규제특례 예시

<참고 3> 특구유형별 예비신청현황(03.9월 기준)

- *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안은 재경부 홈페이지 (www.mofe.go.kr)에서 볼 수 있습니다

보도자료 생산과 :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TEL: 503-9049~50

(과장 최원목, 사무관 김경희)

財政經濟部 公報官

<참고 1>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절차
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정	
재정경제부	
	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구성 (위원장 : 재정경제부장관) ← 규제특례사항 규정
특구 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	
지자체 → 특구위원회(위원장: 재정경제부장관)	
	← 지자체는 특구계획안 작성후 30일 이상 공고·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계획 마련 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 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← 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
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	
특구위원회(위원장: 재정경제부장관)	
	← 재정경제부장관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← 특구계획 승인을 얻으면 토지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
특구 운영	
지방자치단체	
	← 지자체는 특구 운영 성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 ← 재정경제부장관은 법령위반등의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해제
특구 운영 평가	
특구위원회	

* 특구위원회

- 위원장 : 재정경제부장관, 부위원장(2인) : 건설교통부장관, 민간위원중 호선
- 당연직위원(규제소관부처 장관)과 위촉위원(10인 이내 민간위원)으로 구성

<참고 2> 주요 규제특례 예시

* 03.9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경제부에 예비신청한 448개 지역특구중에서 예시

- ①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(의료법 제6조)를 실버타운 조성 등까지 확대하여 대구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「실버타운특구」 뒷받침 가능
- ② 현재 대학이상에서만 임용가능한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교원 및 외국인강사(초중등교육법 제21조)를 특성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허용하여 전북 군산의 「외국어 교육 특구」 지정 가능
- ③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(초중등교육법 제61조)를 특구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정케 됨으로써 교과서 선택, 교육과정 등의 자율성이 허용되어 경남 창녕의 「교육도시육성특구」 지원 가능
- ④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받을 경우 산지전용허가(산지관리법 제14조)를 의제함으로써 강원 인제의 「모험레포츠특구」 내 스키장 설치 가능
- ⑤ 특구지정시 농지전용허가(농지법 제36조)로 농지내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등 유기농업에 필요한 시설설치가 가능하여 전남 강진의 「친환경유기농업특구」 지원 가능
- ⑥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받을 경우 토지이용규제가 완화(농림지역→도시지역)되어 충남 아산의 「R&D 과학특구」 내 과학연구단지 조성 가능
- ⑦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는 자동차 운행제한명령권*(자동차관리법 제25조)을 특구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으로써 남제주군(마라도)의 「국토 최남단 청정특구」 지원 가능

* 마라도를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차량대수가 50대 수준이나 최근 150대 이상 차량이 반입·운행되고 있어 운행제한(규제강화) 필요

<참고 3> 특구유형별 예비신청현황(03.9월 기준)

광역 자치단체	기초 자치단체	특 구 유 형											합계
		교육	의료 서비스	산업 클러스터	R&D	물류	환경	농림 수산	관광	레저 스포츠	문화	기타	
부 산	13	1	-	-	-	1	1	4	5	5	1	2	20
대 구	8	2	2	3	3	-	-	-	4	5	2	1	22
광 주	5	1	1	1	-	-	1	3	3	1	4	3	18
대 전	5	-	-	2	-	-	-	-	1	2	2	-	7
울 산	4	-	-	2	1	-	-	2	3	2	-	-	10
경 기	25	5	-	9	-	2	1	3	13	5	4	3	45
강 원	18	2	3	5	-	-	4	2	15	12	2	3	48
충 북	12	-	1	4	1	1	-	3	7	3	2	-	22
충 남	16	-	1	9	1	1	1	5	20	1	2	1	42
전 북	14	2	1	4	-	2	-	6	9	6	2	3	35
전 남	22	4	1	6	2	-	2	5	16	7	6	6	55
경 북	23	6	3	5	-	2	3	10	19	11	3	3	65
경 남	20	3	-	7	1	-	1	8	14	7	-	2	43
제 주	4	1	-	1	-	1	2	4	4	1	2	-	16
합 계	189	27	13	58	9	10	16	55	133	68	32	27	448